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01 발의연월일: 2024. 10. 15.

발 의 자: 박균택・박상혁・전진숙

장경태 • 민형배 • 조인철

한정애 · 김태선 · 서영교

전현희 · 김현정 · 박홍배

황정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청권자를 직접 피해자인 고 소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정신청 사건 심리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 견 진술 기회를 따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원의 검찰 불기소처분 당부 판단에 재정신청인의 의견이 고려되기보다 검찰 수사기록, 의견서 등을 통해 제시되는 검찰 측 의 견이 더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검찰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이외의 일반 국민이 불복할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이에,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0조 등).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필요한 때에는"을 "재정신청 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인 또는
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	고발인은
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	
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u>다만, 「형</u>	<u><단서 삭제></u>
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생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현행과
략)	같음)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	2)
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u>.</u>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	재정신청인 등 사건관계인

사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 ⑥ (생 략)

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